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가합40026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김종운, 전지환

피고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성, 어영강

변론 종결2024. 10. 16.

판결 선고2024.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 9. 28.부터 2024. 1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27,657,7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1) 주식회사 C(아래에서 보듯 2023. 6. 26.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대표이사인 D가 관리인이 되었으나, 이하 주식회사 C과 위 관리인을 구분하지 않고 'C'이라 한다)은 2019. 12. 11. E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E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22. 7. 25. C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5,629,587,465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2. 7. 25.부터 2024.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2. 하도급 공사명 : 철근콘크리트공사

4. 공사기간: 착공 2022. 7. 25. ~ 준공 2024. 4. 30.

5. 계약금액: 이백오십육억 이천구백오십팔만 칠천사백육십오원(₩25,629,587,465)

공급가액: 이백오십육억 일천팔백만 원(₩25,618,000,000)

부가가치세: 일천일백오십팔만 칠천사백육십오원(₩11,587,465)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 (1) 월 단위 마감 후 30일 후 지급
-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 (3) 지급방법: 현금 100%

나. C과 피고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 체결

C은 2022. 3. 4.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채무자 피고, 보증금액 18,590,459,370원, 보증기간 2022. 1. 10.부터 2024. 11. 8.까지로 하는 내용의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보증약관'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보증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합"은 피고를,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계약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를, "채무자"는 계약자로서 보증채권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주계약"이라 함은 보증서 앞면에 기재된 계약을, "하도급계약"이라 함은 채무자가 주계약의 일부로서 각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말하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른 건설위탁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을 말합니다.
3. "보증사고"라 함은 채무자가 하도급계약상 대금지급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보증책임)

- ① 조합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각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하도급계약상 대금지급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증책임의 범위)

조합이 각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은 보증사고 발생 당시의 최종 하도급계약내용 기준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하도급계약상 착공일부터 계약이행일까지 보증채권자가 실제 시공함으로써 발생한 공사기성금액 중 미수령액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조합의 사전동의(사용기간 연장 등) 없이 지급기일 연장, 다름 어음 등의 발행·배서 등 당초의

지급기일을 사실상 연장하는 경우의 해당금액

2. 각 보증채권자 별로 보증사고 발생 후 계속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

3. 채무자의 기성인정 여부에 불구하고 보증채권자가 시공을 위하여 현장에 반입한 자재 중 시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자재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23. 5. 30.까지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원고의 기성금 청구 등

1) 원고는 2022. 8. 초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매달 말일 그때까지 수행한 공사내역을 토대로 공사물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성고로 산정하여 C에 기성고를 청구하였고, C은 원고의 기성청구액을 기초로 기성금을 확인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이와 같이 기성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C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022. 5. 30.까지 원고가 기성청구한 내역 및 C이 기성확정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회	145,982,651	145,982,651
2회	269,000,000	-
3회	1,150,000,000 1) 다만, 위 3회 기성청구액 1,150,000,000원에는 원고가 미지급받은 2회 기성청구액 269,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865,000,000
4회	1,500,000,000	1,346,000,000
5회	1,697,000,000	1,390,000,000
6회	1,653,800,000	1,353,800,000
7회	1,810,000,000	1,610,000,000
8회	1,762,000,000	1,612,000,000
9회	1,055,000,000	800,000,000
합계	11,042,782,651	9,122,782,651

2)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지급 과정

가) 원고는 2022. 9. 30. C로부터 1회 기성금 145,982,651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22. 11. 초순경 2, 3회 기성확정액 합계 865,000,0000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C은 2022. 12. 2. 원고에게 위 865,000,0000원 중 326,290,336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2. 21. 및 2022. 12. 26. C에 '이 사건 공사의 2, 3회 기성금을 계속해서 미지급할 경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C은 2022.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조합과 협의를 하여 위 미지급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후 원고에게 2022. 12. 29. 470,000,000원, 2023. 1. 5. 68,500,000원을 3회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C은 원고에게 2023. 1. 5. 531,500,000원, 2023. 1. 20. 814,709,664원(현장전기세 3,712,062원 포함) 등 합계 1,346,209,664원(= 531,500,000원 + 814,709,664원)을 4회 기성금으로 지급하였고, 2023. 2. 1. 5회 기성금으로 1,3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C은 원고에게 2023. 3. 7. 672,679,647원, 2023. 3. 15. 200,000,000원 등 합계 872,679,647원(= 672,679,647원 + 200,000,000원)을 6회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3. 3. 20. 피고에게 '피고가 6, 7회 기성금의 지급을 지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23. 3. 22.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과 협의하에 위 미지급 기성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기성금을 미지급하였으며, 결국 원고는 2023. 4.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C은 2023. 4. 12.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6회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사) C은 2023. 4. 1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6, 7회 기성금 합계액 2,180,000,000원 중 10억 원의 기성금을 5억 원씩 분할하여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기성직접 수령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2023. 4. 21. 500,000,000원, 2023. 4. 28. 500,000,000원을 6, 7회 기성금으로 지급받았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는데, C은 2023. 5. 9. 원고에게 재차 '원고가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7, 8회 기성금 합계액 2,403,120,353원 중 10억 원의 기성금을 5억 원씩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기성직접 수령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3. 5. 12.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2023. 5. 30. F 주식회사2)로부터 기성금으로 합계 2,703,120,353원을 지급받았다.

자) 이로써 원고가 2023. 5. 30.까지 지급받은 기성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122,782,651원이다.

2022. 9. 30.	145,982,651	C
2022. 12. 2.	326,290,336	C
2022. 12. 29.	470,000,000	C
2023. 1. 5.	600,000,000	C
2023. 1. 20.	814,709,664	C
2023. 2. 1.	1,390,000,000	C
2023. 3. 7.	672,679,647	C
2023. 3. 15.	200,000,000	C
2023. 4. 12.	300,000,000	C
2023. 4. 21.	500,000,000	이 사건 주택조합
2023. 4. 28.	500,000,000	이 사건 주택조합
2023. 5. 12.	500,000,000	이 사건 주택조합
2023. 5. 30.	2,703,120,353	F 주식회사
합계	9,122,782,651	

라. 2023. 5. 30. 이후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원고의 기성금 청구 등

- 1) 원고는 2023. 5. 31. C에 이 사건 공사의 10회 기성청구로써 2,4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C은 같은 날 2,450,000,000원을 10회 기성으로 인정하는 기성확정을 하였다.
- 2) 한편, C은 2023. 5. 31.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077호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6.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 3) 원고는 2023. 6.경 다시 기성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2023. 6. 28. 위 2)항 기재와 같이 C이 회생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이 사건 공사의 11회 기성청구로써 1,920,000,000원³⁾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C은 같은 날 1,920,000,000원을 11회 기성으로 인정하는 기성확정을 하였다.
- 4) 원고는 2023. 6. 28.경 C에 이 사건 공사의 10, 11회 기성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C은 2023. 6. 29. 원고에게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위 10, 11회 기성금의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마. 원고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청구 등

- 1) 원고는 2023. 6. 30. 피고에게, C이 2023. 5. 31.자로 회생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합계 4,370,000,000원(= 10회 기성금 2,450,000,000원 + 11회 기성금 1,9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보상심사팀 직원들을 파견해 현장실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현장반입자재 중 미사용 자재 수량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3. 7. 13. 피고에게 '현장반입 자재는 모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 사용 중으로 미사용 자재는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 3) 피고는 2023.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11회 기성금 1,920,000,000원에 관하여 추가 보상심사자료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23. 7. 19.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11회 기성금 산출근거4) 를 비롯하여 2022. 8.경부터 2023. 6.경까지의 기성청구 및 확정과 관련된 자료를 회신하였다.

22년 8월	1회	145,982,651	145,982,651	-
22년 9월	2회	269,000,000	-	269,000,000
22년 10월	3회	1,150,000,000	865,000,000	285,000,000
22년 11월	4회	1,500,000,000	1,346,000,000	154,000,000
22년 12월	5회	1,697,000,000	1,390,000,000	307,000,000
23년 1월	6회	1,653,800,000	1,353,800,000	300,000,000
23년 2월	7회	1,810,000,000	1,610,000,000	200,000,000
23년 3월	8회	1,762,000,000	1,612,000,000	150,000,000
23년 4월	9회	1,055,000,000	800,000,000	255,000,000
23년 5월	10회	2,450,000,000	2,450,000,000	-
23년 6월	11회	1,920,000,000	1,920,000,000	-
합계	15,412,782,651	13,492,782,651	1,920,000,000	

- 4) 원고는 2023.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반입자재 등 가설자재에 대한 손료 합계

207,675,73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목: E 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자재 손료 건.

3. 6월분 임대 자재 및 원고 보유 자재 내역입니다.

(주)G	135,224,160
H	8,676,590
(주)I	4,028,000
J(주)	8,400,000
(주)K	297,000
원고 보유자재	51,049,980
합계	207,675,730

6월부터 E 철근콘크리트현장 공사 재개시까지 임대 자재 및 당사 보유자재 손료는 합산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4. 그로 인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재가 회수되지 않아 임대 자재 및 당사 보유자재의 손료 지급을 청구하오니 어려운 당사의 사정을 감안하시어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피고는 2023.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10회 기성금 2,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는 2023.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11회 기성금 1,920,000,000원은 원고와 C간 하도급계약상 지급기일이 있음에도 당사자간 임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한 금액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증약관 제4조 제1호에 따라 보증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로 지급청구한 가설자재 손료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원고와 C)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일 뿐 피고의 보증책임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증책임부인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다.

7) 원고는 그 후 2024. 4. 29. 주식회사 L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9, 21, 22 내지 3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C로부터 11회 기성금 1,9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23. 6.경 공사를 중단한 이후부터 원고가 공사현장에 반입 및 설치한 가설자재를 반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손료) 합계 207,675,73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C은 2023. 6. 25.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더 이상 위 기성금 및 가설자재 손료 지급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C의 위와 같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합계 2,127,657,730원(= 1,920,000,000원 + 207,675,7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1) 원고가 11회 기성금으로 구하는 1,920,000,000원은 원고와 C이 2회 기성금부터 9회 기성금까지 합의로써 그 지급을 유보한 공사대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에 위와 같이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 사전동의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4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위 1,920,000,000원은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에서 제외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C은 '발주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월단위 마감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 각 회차별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C이 원고의 2회 기성청구에 따른 2회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보증약관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3회 이후부터의 기성금은 이 사건 보증약관 제4조 단서 제2호의 '보증사고 발생 후 계속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그 보증책임이 없다.

2) 이 사건 보증약관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을 진다. 따라서 가설자재 손료의 경우 원고가 C을 상대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11회 기성금(1,920,000,00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증약관 제2조는 '피고는 보증사고(C이 하도급계약상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하도급계약상

대금지급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C은 2023. 5. 31.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같은 해 6. 25.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기성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11회 기성금으로 1,920,000,000원을 청구하였고, C은 위 1,920,000,000원 전액을 11회 기성금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원고에게 11회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회생절차개시에 따른 C의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지급채무의 불이행은 이 사건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1회 기성금인 위 1,92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동의 없는 지급기일 연장으로 인한 보증책임 면책 주장5) (1) 먼저 이 사건 공사의 11회 기성금 1,920,000,000원이 원고와 C 사이에 2~9회 기성금 지급당시 합의로써 그 지급기일을 유보(연장)한 공사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와 C 사이에 11회 기성금에 대해 C이 2~9회 기성금 지급당시 미지급 기성금에 대해서 기성으로 인정을 하되, 다만 그 지급시기만을 연장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원고의 기성청구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기성확정을 하였으므로, C이 2~9회 기성금 지급당시 미지급 기성금에 대해 이를 기성으로 인정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2~9회 미지급 기성금을 C과 합의로 그 지급시기만 연장한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각 회차별 기성청구를 할 당시 전회기성누계에 미지급 기성금도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회 기성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을 청구할 당시 C이 기성으로 확인한 금액에 대해서만 전회기성누계로 기재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원고가 미지급 기성금에 대해 C과 합의로써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점, ③ 원고가 2023. 7. 19.자 공문(갑 제5호증)상 이 사건 공사의 11회 기성금에 대해 '유보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 C과 2~9회 기성청구 당시 위 미지급액에 대해 기성으로 인정하되,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그밖에 위 11회 기성금이 원고와 C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연장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1회 기성금 1,920,000,000원이 원고와 C 사이에 합의로써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C 사이에 위 11회 기성금 1,920,000,000원에 관하여 2~9회 기성금 지급당시 합의로써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약관 제4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위 1,920,000,000원에 대해 보증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보증약관 제4조 단서 제1호의 취지는 피고의 동의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연장됨으로써 증가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보증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이미 발생한 하도급대금 자체의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도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으로는 해석되지는 않는다.

② 앞서 본대로 피고는 현재 원고와 C이 원고의 2~9회 기성청구 당시 위 1,920,000,000원을 이미 기성으로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920,000,000원은 이미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자체로서 원고와 C 사이에 그 지급기일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인 2023. 6.경(원고의 11회 기성금 청구 시점)으로 연장한 것만으로 피고의 책임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중 내지 확장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보증사고 이후에 발생한 손해로서 보증책임을 없다는 주장

앞서 본대로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회 기성금을 미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이 C이 2회 기성금을 미지급한 것만으로 이 사건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에서 본대로 원고는 2회 기성청구 이후 C의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C 등으로부터 3~9회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단순히 C의 2회 기성금 미지급만으로 이 사건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23. 6. 30.경 C이 2023. 6. 25.자로 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11회

기성금인 1,9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던 점, ② 피고는 C의 위 회생절차 개시 이후인 2023.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10회 기성금 2,45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3. 8. 31.자 '보증책임부인 통보' 공문(갑 제21호증)상 원고의 이 사건 11회 기성청구가 '보증사고 발생 후 계속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역시 2회 기성금 미지급이 보증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의 2회 기성금 미지급만으로 이 사건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본다면, 원고로서는 C이 단 한번이라도 기성금을 일시적으로 미지급할 경우 그 공사의 진행도와 무관하게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반드시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거나 혹은 피고에 대한 보증금 청구는 포기한 채 잔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하고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심히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그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시점인 2023. 6. 말경(갑 제3호증) 비로소 이 사건 보증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원고의 2회 기성청구에 따른 기성금을 미지급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보증약관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가설자재 손료(207,657,730원)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청구하는 가설자재 손료 207,657,730원이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증약관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는 원고와 C간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상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관상 보증채권자가 현장에 반입한 자재 중 시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의 보증책임이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이 사건 보증약관 제4조 단서 제3호)되어 있는데, 위 가설자재 손료는 쉽게 반출을 할 수 없고 공사현장에 실제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공사의 완성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그 공사대금을 정함에 있어서 하수급인이 공사에 투입하는

가설자재 임대료 등의 제반비용이 고려되지만, 일단 공사대금을 정하여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의 시공비용이 약정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그 초과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공사자재 임대료 등의 시공비용은 그 성질상 당연히 하수급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공사대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증약관 제4조 단서 제3호는 현장반입 자재 중 시공에 사용되지 아니한 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보증책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 이를 넘어 위 규정이 현장반입 자재 중 시공에 사용된 자재에서 발생한 임대료 내지 손료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까지 보증책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원고는 2023. 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공사가 재개되기 전까지 공사현장 안전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가설자재를 철거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둠으로써 가설자재 손료, 즉 가설자재 임대료 상당 손실이 발생되었으므로, C이 원고에게 그 손실금을 지급할 의무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채무 이외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등의 모든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피고의 보상심사팀 직원으로부터 가설자재 손료에 대해서도 보증금 청구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그로 인해 2023. 7. 20.경 피고에게 가설자재 손료에 대해 보증책임의 지급을 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가설자재 손료를 보증금으로 청구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직원이 그와 같은 말을 하였어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위 직원이 한 말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가설자재 손료를 보증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설자재 손료에 해당하는 207,657,730원이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9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3. 9.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동빈

판사남원석

판사김현주

- 1) 다만, 위 3회 기성청구액 1,150,000,000원에는 원고가 미지급받은 2회 기성청구액 269,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기록상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의 자금관리사로 보인다.
- 3) 위 다.항에서 살펴본대로 원고가 기성청구한 금액 합계 11,042,782,651원에서 피고측으로부터 2023. 5. 30.까지 지급받은 기성금 합계 9,122,782,651원을 뺀 금액이다.
- 4) 이 사건 공사의 11회 기성금은 아래 표의 유보금액 합계액과 동일하다.
- 5) 원고는 대법원 2000다11560호 등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보증약관 제4조 제1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보증채권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면책되는 보증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보증약관 제4조 제1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